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권인순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2023. 11. 20.
-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2.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안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각 지역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안 제6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 제6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제5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2023. 8. 17. ~ 8. 21.(제출된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가.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최근 각 지역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에서 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 서울시 16개 자치구 제정 시행 중(별표 2 참조)

라.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조 문 | 규 정 사 항 | 조 문 | 규 정 사 항 |
|-----|---------------|------|------------------------|
| 제1조 | 목 적 | 제8조 | 지원기준 |
| 제2조 | 정 의 | 제9조 | 설치규격 |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제10조 | 실태조사 |
| 제4조 | 구민의 의무 | 제11조 | 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
| 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
| 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제13조 | 시행규칙 |
| 제7조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 | |

-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구민의 의무)에서는 구민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장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는 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 6항에서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한 건물, 시설 등에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제4조의 규정은 타당함.
-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5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에 따라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

제1조~제3조(생략)

제4조(시민, 군민, 구민의 책무) 시민, 군민,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3조(후략)

(책무로 표기하지 않고 의무로 표기한 사유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을 고려할 때 시민에게 책임이 수반된 책무라는 표현보다는 의무라는 용어를 권고하고 있어 순화된 용어로 구민의 의무를 규정함)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제8조(지원기준)에서는 지원 시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할 것 명시하였음.
-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와 중첩되어 동 조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에 포함. 다만, 제 6조의 지원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제8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제7조,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금액, 범위는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함.
- 제10조(실태조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4조(국민의 의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항에 의거하여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자기가 소유한 건물, 시설 등에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5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최근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부서는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법령에 규정하고(자연재해대책법), 권고함에 따라 최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차수관 등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볼 때 본 제정안은 구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책무)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내 지방자치단체별 침수방지시설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비교표

(2023. 11. 현재)

| 연번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 지원범위 |
|----|--------|----------------|----------|----------|
| |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공동주택 | |
| 1 | 서초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2 | 강남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5백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3 | 강북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5백만 원 이하 | 100분의 50 |
| 4 | 관악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5 | 광진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6 | 구로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7 | 금천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8 | 동작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9 | 서대문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10 | 송파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11 | 양천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12 | 용산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13 | 영등포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14 | 동대문구 | 2백만 원 이하(단독주택) | 1천만 원 이하 | 100분의 90 |
| 15 | 도봉구 | ※ 예산의 범위 내 | | |
| 16 | 은평구 | ※ 예산의 범위 내 | | |